

'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. 처분(안)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 안 이 유

-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행정전산화등에 필요한 물품확보
- 기구신설 및 환경업무 보강에 따른 물품취득
-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 영농기계화 교육용및 시험포장관리용 농기계 구입
-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 전환에 따른 장비의 교체
- 소방관서의 기구증설과 화재진압장비 보강등에 따라 물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려는것임.

2. 주 요 내 용

○ 행정장비 현대화 및 전산화에 따른 물품취득	—————	32 품목	678 점
○ 기구신설(가축위생시험소괴산지소)에 따른 물품취득	—————	13 품목	21 점
○ 보건환경, 상수도분야 업무추진을 위한 물품취득	—————	14 품목	48 점
○ 화재진압용 및 구급용차량 취득	—————	4 품목	22 점
○ 사업용차량 및 도로관리를 위한 물품취득	—————	6 품목	10 점
○ 시험포장관리 및 교육용 농기계 취득	—————	10 품목	26 점
○ 각종 연구시험 및 검사를 위한 물품취득	—————	20 품목	47 점
○ 기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취득	—————	11 품목	18 점
○ 노후물품등 대체취득 및 처분	—————	30 품목	89 점

3. 제 안 근 거

○ 지방재정법 제 95 조 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

○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13 조 (물품관리기준의 설정)

○ 지방자치법 제 35 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4. '93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, 처분(안)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6. 정수관리대상물품내역 : 별첨